

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

(박강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3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25일

발 의 자: 박강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성준, 김원태,
남창진, 박수빈, 박철성,
박환희, 소영철, 송재혁,
유정인, 유정희, 윤종복,
이상욱, 이소라, 이영실,
이용균, 이종태, 임규호,
임종국, 최재란, 한 신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써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짐. 줍깅을 매개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발맞춰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서울특별시의 사회적 자본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됨. 조례를 통한 제도 정립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으며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서울특별시의 특색에 맞춘 줍깅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줍깅을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1호)
- 나. 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줍깅 활동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마.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줍강의 날로 하고, 줍강의 날이 포함된 주를 줍강 주간으로 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줍깅”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.
2. “줍깅앱”이란 줍깅에 참여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제작하거나 인정 또는 지정한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줍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줍깅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줍깅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2.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재원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
4.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줍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줍깅활성화 사업)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
2. 홍보·안내 및 교육 실시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줍깅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
2. 줍깅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줍깅 활동 인증 등) ① 시장은 줍깅 활동을 일정 기준 이상 달성한 자에 대하여 인증스티커와 배지를 제공하거나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줍깅앱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7조(인센티브 제공) ① 시장은 줍깅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줍깅 활동을 인증받은 경우
2.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② 시장은 줍깅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.

1. 목표걸음 수 또는 목표 쓰레기 수거량을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

제8조(줍깅의 날)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줍깅의 날로 하고, 줍깅의 날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의 날과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줍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줍깅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 등) 시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